제정: 2014. 1.1. 개정: 2023.11.1.

## 해병대군사학과 규정



단국대학교 해병대군사학과

## 해병대군사학과 훈(訓)

## 慧眼・眞實・獻身

(혜안)

(진실)

(헌신)

## 意味

● 慧眼: 앞날을 내다보는 (사물/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) 안목과 식견 [學問]

● 眞實: 거짓이 없고 참됨 [生活]

● 獻身: 몸과 마음을 바쳐 있을 힘을 다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함 [精神]

## 해병대군사학과 학생 신조

- 하나. 자랑스러운 단국인으로서 창학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구국, 자주. 자립의 정신을 계승하겠다.
- 하나.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켜, 진리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지덕체 연마에 매진하겠다.
- 하나. 장차 해병대 장교로서 충성·명예·도전을 생활덕목으로 삼아, 이웃·사회·국가·인류를 위해 헌신하겠다.

# 해병대군사학과 규정

## 해병대군사학과 규정 연혁

### 1. 제정(2013.09.01)

- 가. 해병대군사학과 규정은 해병대군사학과 학생들을 장차 전문적인 군사지식을 갖춘 직업장교로 양성하기 위하여 장교의 품성과 자질 계발, 잠재역량계발, 생활지도 등 에 관한사항을 제정함.
- 나. 해병대군사학과의 특성화 교육 및 활동, 다전공 <del>의무화권장</del>, 졸업인증요건, 생활 지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, 이외의 사항은 단국대학교의 학칙, 군장학생 규정을 적용하고, 학생군사교육 관련 법령을 준용함.
- 다. 특히 졸업인증요건과 다전공의무화 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장교 임관 시 병과선택, 임관 후 석·박사 위탁교육, 장기복무 선발, 진급 선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, 불가피한 사유로 전역 시 제2전공과 졸업인증요건을 활용하여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.

#### 제1장 총칙

##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전문지식, 체력, 덕성을 갖춘 전문 직업 장교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품성, 자질, 잠재역량을 계발하기 위하여 ①학생들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②학생들의 생활 목표 및 자세, ③학업관리, ④잠재역량계발, ⑤특성화 교육 및활동, ⑥학생지도 및활동, ⑦포상 및 징계, ⑧학생자치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혜안·진실·헌신의 정신을 배양하고, 상호 존중 및 배려, 절차탁마의 기풍과전통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.

#### 제2조(해병대군사학과 학생신분)

- 1.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해병대 전문 직업 장교가 되기 위해 군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다.
- 2.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졸업 후 학사사관이 될 해병대 예비장교후보생이다.
- 3. 군<del>장학생 신분으로 "군장학생 규정"과 "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"의 적용을 받는다.</del>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(구.군장학생) 신분으로 "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"과 "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"의 적용을 받는다.

#### 제3조(규정의 성격)

- 1.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학칙과 <del>군장학생</del>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의 하위 규정이다.
- 2. 이 규정은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에게 대학생활 및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고, 교수와 훈육관의 학생 생활지도와 잠재역량계발 지도의 근거를 제공한다.

#### 제4조(적용대상 및 범위)

- 1. 이 규정은 해병대군사학과 재학생에게 적용한다.
- 2.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국대학교 학칙과 시행세칙, <del>군장학생</del>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적용<del>하며, 학생군사교육</del> 관련 법령을 준용한 다.

## 제2장 생활목표 및 자세

#### 제5조(책무)

- 1.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장차 전문 직업 장교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품성, 자질, 잠재 역량을 계발하여 국가와 군에 헌신·봉사해야 한다.
- 2. 이를 위하여 대학생활간에 전문 직업 장교에게 요구되는 ①올바른 가치관과 윤리 ② 고결한 품성과 강인한 체력 ③군사전문지식 ④인간 존중과 배려의 리더십을 함양하고, 혜안·진실·헌신의 정신을 견지해야 한다.

- 3. 혜안·진실·헌신의 해병대군사학과 훈을 실천하기 위하여 ①자신을 경영하고 관리해야 한다. ②항상 자신을 새롭게 변화·발전시켜야 한다. ③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과의무를 다해야 한다.
- 4. 자신을 계발하고 절제하여, 지속 성장·발전 가능한 올바르고 좋은 습관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.
- 5. 학칙 등 대학이 정한 규정과, <del>군장학생</del>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시행규칙, 해병대군사학과 규정,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자치활동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 야 한다.
- 6. 해병대군사학과 학생다운 언행과 자세를 유지하고, 자긍심과 명예심을 견지해야 한다. 제6조(생활목표)

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혜안·진실·헌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학년별 생활 목표를 실천해야 한다.

구 분	생 활 목 표
1학년	자기 발견/이해, 대학생활 적응, 해병대군사학과 규정 숙지/준수
2학년	해병대 가치관과 장교 정신 함양/실천
3학년	전문 직업 장교에게 요구되는 잠재역량계발 목표 달성
4학년	인간 존중과 배려의 리더십 배양

#### 제7조(정체성 확립)

- 1.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심리검사 및 진단, 자기성찰을 통하여 자기를 이해하고 발견하여 조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.
- 2. 전문 직업 장교로 성장하기 위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,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으로 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조기에 자신의 목표와 진로를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#### 제8조(절차탁마·건전 기풍 조성)

- 1. 선후배·동기생간 충고, 조언, 조력, 격려 등을 통해 매사 신중하게 절차탁마하고 건전한 생활 기풍을 조성해야 한다.
- 2. 해병대군사학과의 상·하급생 관계는 상·하급자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배려의 동반자적 선·후배 관계이다.
- 3. 선·후배 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며, 사적인 제재, 명령, 지시, 소집, 교육, 간섭을 금지한다. 단, 훈육관 또는 학과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학생은 학습, 행사, 단체활동 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지시, 소집, 교육, 감독 등을 할 수 있다.
- 4. 상급생은 솔선수범하고, 학업, 잠재역량계발, 자기 경영·관리 등에 관한 자신의 경험과 기술(Know-how)을 하급생에게 전수하고,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5. 해병대군사학과 학생회 임원은 동급생 및 하급생의 해병대군사학과 규정 미 준수,

- 기강문란 행위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하며, 규정에 따라 상(벌)점을 부여하고 훈육관 (이후 학과장)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- 6. 이외의 상급생은 하급생의 해병대군사학과 규정 미 준수, 기강문란행위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선도하며, 해병대군사학과 학생회 임원에게 상(벌)점 부여를 건의할 수 있다.
- 7. 해병대군사학과생은 학생회 임원의 지적 및 보고서 제출 지시에 있어 지체 없이 훈육관에게 보고하고 지도와 조치를 받아야 한다.
- 8.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및 가혹 행위를 금지한다.
- 9. 폭언, 욕설, 인격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을 금지한다.
- 10. 언어 및 신체적 성희롱. 성추행. 성폭행 등 성범죄 행위와 성적 접촉을 금지한다.
- 11.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이성교제는 도덕적 한계 내에서 허용한다.
- 12. 군장학생의학과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와 행동을 금지한다.
- 13. 해병대군사학과의 정체성과 전통을 계승·발전시키고, 해병대군사학과의 명예와 자 긍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.

#### 제9조(용모 및 복장)

- 1.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개인위생을 청결하게 하고,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외적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전문 직업장교에게 요구되는 내적품위를 함양하고 유지해야 한다. 1-1. 면도와 두발을 손질하여 청결과 단정함을 유지해야 한다.
  - 1-2. 학기(계절수업 및 계절학기 포함) 중 두발의 유색염색 및 펌을 금지하며, 해병대군사학과생다운 두발상태를 유지해야 한다.
- 2. 해병대군사학과 단체복장 착용은 학과장의 지도에 따른다.
- 3. 해병대군사학과 복장은 주 1회 이상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, 행사, 홍보, 견학 등 단체 활동 시 착용할 수 있으며,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착용할 수 있다.
- 4. 평상시 복장은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.
- 5. 해병대군사학과 제복 착용 시 귀걸이, 반지, 목걸이 등 장신구 착용을 금지하며, 자유복 착용 시에는 장신구 착용을 제한한다(장신구 착용 제한사항은 학생회 공지사항에 따른다).

#### 제10조(언행 및 태도)

- 1.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며, 의사표현은 간단명료하게 하고, 경박하고 저속한 언어 사용을 금지한다.
- 2. 상급생에게 경어를 사용하며, 존경하는 마음가짐과 공손한 태도를 유지한다.
- 3. 상급생은 하급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언어를 사용한다.
- 4. 하급생은 상급생을 "000 선배님"이라고 호칭하고 상급생은 하급생을 "000 후배"라고 호칭한다. 동급생끼리 "000 형"이라는 호칭 사용을 금지한다.
- 5. 허위보고를 근절하고, 허위사실, 불확실한 내용, 유언비어 유포를 금지한다.
- 6. 단정한 자세와 절도 있는 동작을 취하고, 의젓하고 당당한 보행 자세와 예의바른 행동을

유지해야 한다.

- 7. 보행 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취식하는 등 품위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- 8. 상·하급생간 인사는 상호 목례와 격려의 인사말을 나누며, 교수에게는 공손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. 단, 해병대군사학과 제복 착용 시, 또는 아침점호교육 시에는 상급자에게 거수경례를 한다.

#### 제11조(보고 및 건의)

- 1. 지도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①개인 신상의 변동, ②학업 및 잠재역량계발, ③학 내·외 활동 등에 관한 사항, ④지시한 사항과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적시적절하게 훈육관과 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2. 보고는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하되, 임의판단 또는 지체하여 조치와 지도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①최초보고, ②중간보고, ③최종보고를 한다.
- 3. 발전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에 훈육관과 학과장에게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.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훈육관과 학과장이 결정한 의견을 존중하고, 집단 및 연명상신을 금지한다.
- 4. 상급생은 하급생의 의견이 정당하고 유익하다고 인정될시 하급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하며, 필요시 훈육관에게 보고 및 건의한다.
- 5. 학생회 활동 및 행사, 동아리 활동 등 단체 활동은 시행 전 활동계획을 훈육관과 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활동결과는 시행 후 보고해야 한다.

#### 제12조(출석 및 소집)

- 1.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교육, 행사, 학생 자치 및 단체 활동과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집에 출석해야 한다.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은 최단시간 내 개인 사유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.
- 2. 유계결석의 조건은 ①본인 질병 치료와 직계가족 사망 ②본인 및 4촌 이내 친척의 결혼, ③대내·외 행사 참석, ④법원의 소환, ⑤기타 훈육관과 학과장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이다.
- 3. 무계결석은 사전 승인 없이 결석한 것을 말하며, 무계결석 시에는 7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벌점을 부여한다.
- 4. 비상소집을 위하여 학과 학생회와 학년별 비상소집 연락망을 편성 · 운용해야 한다.

#### 제13조(안전 및 건강관리)

- 1.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항상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여 신체의 손상과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.
- 2. 부상과 질병으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훈육관과 학과장에게 보고해야 하며, 사전에 보고 곤란 시 치료 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.
- 3.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정례신체검사 결과

#### 제3장 학업관리

- 제14조(교육목표) 해병대군사학과는 21세기 안보환경과 미래 전장 환경에 요구되는 전문 직업 장교가 갖추어야 할 기반지식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. 이를 위하여,
  - 1. 국가안보 및 국방환경을 분석·평가하고 군사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군사 전문지식을 배양한다.
  - 2.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미래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체계적인 군사력 운용 이론과 전산정보처리 능력을 배양한다.
  - 3. 군의 국제적 교류 확대 및 임무 증대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배양한다.
  - 4. 지(智), 신(信), 용(勇)을 겸비한 군사지도자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지도력을 집중 계발한다.

#### 제15조(교육과정)

- 1. <del>다전공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.</del>**다전공 이수를 권장한다. ※ 2024학**년도 기준 23학번부터 적용
- 2. 교양과목 및 특별강좌 수강과 자율학습을 통하여 학교와 해병대 측이 요구하는 졸업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- 3. 학과 교과목 중 특성화 된 교육 활동을 통하여 장교의 품성과 자질을 계발한다.

#### 제16조(학점 취득)

- 1. 졸업학점은 입학연도의 대학학칙에 명시된 취득학점을 적용한다.
- 2.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매학기별 평균 B<sup>0</sup>(3.0)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.
- 3. 학기말 평균성적이 100분의 70미만인 경우는 <del>군장학생</del>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 자의 선발을 취소한다.

[<del>군장학생</del>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3조(<del>군장학생</del>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) 3.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]

[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2조(성적)] 법령 참조.

#### 제17조(전공 교과편성)

- 1. 교과목 편성은 학기별 종합강의시간표 및 학교 홈페이지 학과 교과과정표를 참조한다.
- 2. 대학 교과목 개편과 교육협의회 결정에 의거 필요시 교과목을 개편할 수 있다.

#### 제18조(전공 수강)

- 1. 학과기초 및 전공필수 교과목은 필히 수강해야 한다.
- 2. 제2전공과목 수강시간과 중복, 교환학생 파견 등으로 전공필수 과목 수강 곤란 시에는

군사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공 선택과목 중 유사과목을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. 제19조(졸업)

- 1. 졸업요건은 학칙과 학칙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졸업학점 <del>및 다전공의무화(복수전공, 부전공) 학점</del>을 취득하고, 졸업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- 2. 졸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"학칙 제47조(조업요건)"과 "학칙 시행세칙 제15장 졸업 인증제"를 참고한다.

#### 제20조(군사학 부전공)

1. "학칙 제46조(다전공)"과 "학칙 시행세칙 제7장 다전공"을 참고한다.

#### 제21조(재입학·편입학·전과)

- 1. <del>군장학생과</del>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은 "<del>군장학생</del>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" 및 "<del>군장학생</del>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시행규 칙"에 따른다.
- 2.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의 신분에 변동이 있을시 학교(단국대)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는 "장학금 지급 규정<del>내 장학금 지급 기준표"를을</del> 참조하고 따른다. 2-1.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신분으로 지급받은 모든 <del>복장,</del> 비품, 장구 일체는 학과에 반납하여야 한다.
- 3. 신입학, 편입학, 재입학은 "학칙 제5장 신입학, 편입학 및 재입학"에 따른다.
- 4. 전과는 "학칙 제19조 (전부(과))"와 "학칙 시행세칙 제6장 전부(과)"에 따른다.

#### 제4장 잠재역량계발

#### 제22조(목적·배경)

- 1. 자율학습과 특성화 교육 및 활동을 통하여 전문 직업 장교 및 군사전문가로서의 품성, 자질, 잠재역량을 개인의 재능과 특성에 따라 계발한다.
- 2. 졸업인증요건과 다전공<del>의무회</del> 제도는 장교 임관 시 병과 선택, 임관 후 석·박사 위탁 교육, 장기복무/진급 선발에 요구되는 기본자격과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.

#### 제23조(졸업인증요건)

- 1. 학교 측 졸업인증요건은 "학칙 제47조(졸업요건) ⑤항, ⑦항" 및 "학칙 시행세칙 제15장 졸업인증제"를 참조한다.
- 2. 해병대에서 제시한 <del>졸업인증요건은 다음과 같다.</del>추가적인 구비요건은 아래와 같으며, 가급적 4학년 1학기까지 달성하도록 권장한다.

구 분	태권도	체력검정
졸업인증요건	1단 이상	2급 이상

#### 제24조(졸업인증요건 달성)

- 1. 학교가 제시한 졸업인증요건 달성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.
- 2. 태권도(해병대가 제시한 졸업인증요건)
  - 2-1. 개인수련 혹은 무도 교과목 수강을 통하여 졸업 전까지 1단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
  - 2-2. 품증은 단증으로 전환해야 한다.
  - 2-3. 태권도 졸업인증요건(단증 취득) 달성 후, 국기원에서 발급받은 품단확인서를 훈육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3. 체력검정(해병대가 제시한 졸업인증요건)
  - 3-1. 체력검정의 기준은 "국방부 체력검정기준"을 적용한다(국방부 "체력검정기준표" 별도 공지).
  - 3-2. 학년별 체력등급 달성 목표는 다음과 같다.

학년	1학년	2학년	3학년	4학년
달성 목표	3급	3급	2급	2급1급 이상(권장)

- 3-3. 체력검정과 관련 학기 중 매일 아침 07시~08시(60분) 동안 체력단련 위주의 아침<del>점호를</del> 교육을 훈육관 지도하 실시한다.
- 3-4. 매학기 1회 이상의 체력검정을 실시하고, 목표 미달성자는 재평가를 실시한다.

제25조(졸업인증요건 미달성자) 졸업인증요건 미달성자는 훈육관이 관심을 가지고 별도 관리한다<del>(학부모에게 통보)</del>.

#### 제26조(군사 및 교양도서 탐독)

- 1. 군사전문지식과 교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군사 및 교양도서 탐독을 생활화한다.
- 2. 학과장이 추천한 권장도서 또는 본인이 선정한 도서에 대하여 학기별 독서계획을 수립하여 훈육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3. 훈육관은 학생 개인별 독서 목록을 기록/유지, 훈육평가에 반영한다.

#### 제5장 특성화 교육 및 활동

제<del>27</del>26조(목적) 전문 직업 장교와 군사전문가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성화 교육·활동을 실시한다.

#### 제2827조(특성화 교육)

- 1. 특성화 교육은 교과목에 반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학기 중 편성에 제한이 있을시 계절수업의 형태로 구분하여 개설한다.
- 2. 특성화 교육의 교과목은 이수영역이 학과기초 또는 전공필수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- 3. 해외연수, 교환학생 파견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특성화 교육 교과목 수강이 불가할 시에는 사전에 학과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다음 학기 교육과정에 필히 수강

신청 후, 참가해야 한다.

#### 제2928조(특성화 활동)

- 1. 장교로서 품성과 자질을 계발하고 학습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방문, 안보현장 견학, 군 행사참가 등의 특성화 활동을 실시한다.
- 2. 특성화 활동은 학과예산 또는 행사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며, 학년별 연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.

구분	활동 <del>(시기)</del> 명(일정)	주최 / 내용
	학과 체육대회(연1회)	학과 학생회 / 친목도모
공통	학술제 & 전적지 답사(학사일정 고려)	지도교수 / 연구, 체험 발표
	학과 졸업식(매년 2월)	학과 학생회 / 졸업생 환송 및 사은회

구분	활동 <del>(시기)</del> 명(일정)	주최 / 내용
신입생	단과대학 주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	단과대학 학생회 / 대학학칙 및 대학생활 안내, 학과별 자체 세미나 실시
4학년	해외 군사·문화 탐방(7~8월 중)	학교(학과) / 해외연수

구분	활동 <del>(시기)</del> 명(일정)	주최 / 내용
1학년	서해수호의 날(3.24), 국군의 날(10.1)	국가보훈부/추모행사, 국방부/건군 기념행사
2학년	서울수복 기념일(9.28)	해병대 / 6·25 전쟁시 서울수복 기념행사 참가
3학년	해병대 창설일(4.15)	해병대 / 창설 기념행사 <del>참가</del>
4학년	연평도 포격도발(11.23)	해병대 / 추모행사 <del>참기</del>

- 3. 특성화 활동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실시한다. 학사일정, 협조 여건 등을 고려, 가용 학년 혹은 활동을 통폐합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- 4. 특성화 활동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.
- 5. 특성화 활동은 필히 참가해야 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참가 곤란 시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.

## 제6장 학생지도 및 활동

#### 제3029조(개인 상담 및 지도)

- 1. 건전한 대학생활과 장래 진로 설계를 위해 지도교수와 훈육관에게 상담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.
- 2. 학생들을 위해서 주임교수(학과장)는 학과 초빙교수를 전문상담교수로 임명하여 운용할수 있다.
- 3. 신입생은 훈육기록부 양식에 의거 기본적인 신상을 작성하여 훈육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.

훈육관은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.

- 4. 학생들의 대학생활, 정신건강 등 대학생활전반에 관한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"대학생활상담센터 및 양성평등상담소"활용을 적극 권장한다.
- 5. 장래 진로 변경 시 훈육관과 지도교수에게 필히 상담을 받아야 한다.
- 6. 학생 개인시간과 훈육관의 가용시간을 고려하여 매학기 1회 이상 정기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, 수시상담은 언제나 가능하다.
- 7. 학업성적 저조자, 졸업인증요건 미달성자, 적성평가 저열자, 생활태도 불량자 등은 훈육관이 지정한 시간에 특별 상담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#### 제<del>31</del>30조(훈육 <del>및 상호적성</del> 평가)

- 1. 적성평가는 훈육관이 군사학과생을 평가하는 ① <u>훈육 적성평가</u>와 단체생활에 있어 훈육관이 미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군사학과생 상호간에 실시하는 ② <u>상호적성 평가</u>로 구분한다. 훈육평가는 자질, 품성, 생활태도, 체력을 훈육관이 평가하여 생활지도와 잠재역량 계발지도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.
- 2. <del>적성평가는 3, 4학년을 대상으로 연1회(11월) 실시한다.</del> 훈육평가는 4년간 종합하여 4학년 2학기 중 실시하며 5개 요소를 평가한다.
- 3. <del>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.</del>훈육평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평가한다.

	평가항목	
① 명예심(용모 및 태도)	② 준법정신	③ 지휘통솔(Leadership)
④ 도전정신(자기계발)	⑤ 교우관계(Fellowship)	

- ① 명예심(용모 및 태도), 준법정신
- ② 지휘통솔(Leadership)
- ③ 도전정신(자기계발·관리)
- ④ 교우관계(Fellowship)
- ⑤ 체력관리(1~4년 1차 체력검정 결과)
- 4. 평가방법은 <del>다음과 같다.</del> 각 평가 요소별 20점씩 부과,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, 피 평가자의 우수한 특성 및 개성, 충고 및 개선사항 등을 기술한다.
  - 4-1. 훈육 적성평가는 훈육관이 학년별 평가집단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  - 4-2. 상호적성 평가는 군사학과생 본인의 적성 및 성적에 상관없이 동기생을 평가하며 평가 단위는 학년별 그룹을 형성하여 평가한다(본인에 대한 평가는 제외).
  - 4-3. 피 평가자의 우수한 특성 혹은 개성, 충고사항을 평가 보고서에 기재한다.
  - 4-4. 군사학과생 개인별 상호평가 방법은 A, B, C, D, E 등급으로 구분하며 요소별 등급은 A(10), B(40), C(30), D(10), E(10) 비율로 적용한다.
- 5. 적성평가훈육평가 결과는 훈육기록부에 반영하고 생활지도에 활용한다.

#### 제31조(초임장교 예비 병과분류) 「추가」

- 1. 매년 해병대사령부로부터 3, 4학년을 대상으로 「초임장교 예비 병과분류 계획」을 접수한다.
- 2. 해당 학년별 예비 병과분류(안)을 공지한다.
- 3. 예비 병과분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.
  - 3-1. 해당 학년 당사자 학생들의 의견수렴
  - 3-2. 병과 조정 인원 발생 시, 상담 진행 후 재조정
  - 3-3. 조정 불가 시,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학과 차원에서 조정 후 해병대사령부로 통보 3-3-1. 다전공(복수전공 > 부전공) 관련 병과별 관련학과를 최우선순위로 한다.
    - 3-3-2. 최우선순위로 조정이 불가할 시, 누적 성적으로 순위를 결정한다.
    - 3-3-3.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학생은 미배정 병과에 임의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구	분	병과별 관련학과	
보	問問		
포	병	• 전 학과	
기갑			
*히	공	• 누적성적(30%) + 체력(30%) + 공인외국어(40%)	
정	보	• SW융합대학	
구0	贸	• 공과대학, 환경원예조경학부, 도시계획·부동산학부	
정보통신 • SW융합대학		• SW융합대학	
_	보급	• 경영경제대학, 환경자원경제학과, 생명자원학부, 식품영양학과, 식품공학과	
군 수	수송	• 경영공학과	
'	병기	• 공과대학, 신소재공학과, 에너지공학과	
재	정	• 경영경제대학	
공보	정훈	• 문과대학,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, 문예창작학과	
군사경찰 • 법과대학		• 법과대학	

- \* 항공병과 : 체력 부분은 국민체력100 인증센터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기준으로 한다. 체력측정 인증서 유효기간은 예비 병과분류 월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. 「1등급\_30점, 2등급\_25점, 3등급\_20점, 3등급 미만\_10점」으로 적용한다.
- ※ 성적은 누적학점에 대한 환산점수(백분율)를 기준으로 한다.
- ※ 공인외국어는 「공인영어성적 환산 기준표」를 기준으로 한다.

#### 제32조(생활관 입사 및 생활)

- 1. 생활관 입사는 학교 방침에 따르며, 생활관 <del>관리</del>행정팀과 학생회에서 정한 생활관 관리 규정과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.
- 2. 생활관 이외에 거주하더라도 생활관 거주 학생과 동일한 일과표에 따라 최소한의 통제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.
- 3. 생활관 배정은 생활관 행정팀으로부터 위임 시. 학생자치위원회(학과 학생회+과대표)의

#### 결정에 따른다.가 배정할수 있다.

- 4. 생활관 규정에 의거 생활관 <del>관리</del>행정팀으로부터 상·벌점을 부여 받을 시 훈육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해병대군사학과 상·벌점에 그대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5. 생활관 실태 점검은 해병대군사학과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주 1회 실시하며, 훈육관이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지도한다(생활관 관리행정팀 점검은 별도).

#### 제33조(대외활동)

- 1. 대외활동 참가 시에는 사전에 주임교수(학과장)의 승인을 득한 후 참가해야 한다.
- 2. 대외활동에 참여시 대학과 해병대군사학과의 자긍심을 견지하고 명예를 고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, 대외활동간 올바른 언행과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. 대외활동 참가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.

#### 제34조(국외여행 및 파견)

- 1. 개인적인 해외여행은 학과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.
- 2. 어학연수, 교환학생 파견 등 기타 사유로 해외연수 및 파견 시에는 학점인정, 졸업학점 취득 이상유·무, 졸업인증요건 충족 등을 고려하여 졸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시가능하며, 사전 이를 검토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(학과장)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해야한다.

#### 제35조(교육과정소위원회)

- 1.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3조(구성)을 근거로 해서 매년 3월에 시달되는 교무처의 "00학년도 대학별 학부·학과(전공)별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명단 제출 요청" 공문을 참조한다.
- 2. 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해임과 관련된 사항은 해병대사령부로 심의를 요청한다.
- 3.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, 비치하여야 한다.
- 제36조(학생자치활동 지도) 학생자치활동 규정은 해병대군사학과 규정의 하위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.

제37조(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편성)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자치활동 규정을 참조한다.

### 제7장 포상 및 징계

#### 제38조(목적)

- 1. 포상 및 징계는 자발적으로 대학의 학칙과 해병대군사학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데 있다.
- 2. 포상 및 징계는 올바르고 건전한 기풍을 조성하는데 있다.
- 3. 포상 및 징계는 자신을 경영·관리하고 지속 성장·발전 가능한 올바르고 건전한 생활

습관을 배양하고 촉진하는데 있다.

4. 학업성적, 졸업인증요건 저조로 수학능력이 부족하여 졸업이 불가능하거나 장교로서의 품성 및 자질 저열 시에는 조기에 전과, 편입을 권고하고 <del>군장학생</del>군 가산복무 지원 금 지급 대상자 해임 및 제적에 대한 심의를 해병대사령부 측에 요청한다.

제39조(포상 및 징계) "학생상벌 규정"에 따른다.

#### 제40조(상·벌점제도)

- 1. 포상 및 징계 결과를 상·벌점 제도에 적용한다.
- 2. 상·벌점 내용 및 결과는 훈육 자료로 활용한다.
- 3. 학생회 임원은 동급생 및 하급생의 모범적 활동, 해병대군사학과 규정 미 준수, 기강문란 행위 등에 대하여 상·벌점 부여를 훈육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4. 학생들은 규정 미 준수, 기강문란행위 등에 대한 인원 발견시, 학생회 임원에게 상·벌점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.
- 5. 상 · 벌점 관련 사유서는 6하 원칙에 의거 작성/제출하여야 한다.
- 6. 해병대군사학과 학회장은 학기별 2번(중간/기말고사 전) 상·벌점 종합현황을 훈육관에게 보고하고, 학생들에게 공지해야 한다(단, 훈육관에게 일일보고는 유지).
- 7. 상·벌점 기준과 세부내용은 학생회 구성원이 매 학기 수정/보완하여 개강과 동시에 학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공지해야 한다.
- 8. 상·벌점에 관한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학생회 공지사항에 따른다.

#### 제41조(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해임·재적 심의 및 조치)

- 1. 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다.
- 2. 학업성적 저조자, 졸업인증요건 미달성자, 품행 불량자, 단체생활 부적응자에 대한 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해임 및 제적 심의를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한다.

#### 제42조(졸업심의)

- 1. 졸업심의는 대학의 학칙과 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.
- 2. 심의 시 예비 장교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훈육기록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.
- 3. 학과 교육과정소위원회 심의 결과 장교로서의 품성과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<del>군장학생</del>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해임 및 제적 심의를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한다.

#### 제8장 보 칙

제43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(학칙 시행세칙 등 상위 규정 포함), 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(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세칙 포함)에 따르며, 학과 교육과정소위원회의 결정 및 학생자치활동 규정, 회칙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4.26.)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7. 5. 1.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10.16.)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. 11. 1. 부터 시행한다.